

2019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019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관련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제출하셔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서류 및 각종신고의 내용은 직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증빙을 근거로 근로소득세액 결정에 반영되오니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일정:

일정	구 분	비 고
~2020.01.31(금)	소득공제 신청서 등 서류제출	제출기한 엄수 요망
~2020.03.02(월)	소득공제 신청 내역 확인 및 서류보완, 전산입력, 신고	
2020.03. 해당 급여일	환급(추징)금 정산	2월 귀속 급여 반영

2. 제 출 처: 메일 발송(1068630752@s-waykorea.com), 메일 발송 시 제목 통일 [2019연말정산 - 사업장명, 이름]
우편발송(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7층(방이동, 제이타워빌딩))

3. 제 출 서 류: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 신고서 3쪽 "신고인"서명 반드시 必
- 소득·세액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 작성
- 미제출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함

(2)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가족관계사항 변경 시)

- 신고서에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명확히 기재
- 등본으로 부양가족 확인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공제대상 반드시 표시해주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 (2019년 중도입사자는 월별 세부내역 제출 必)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 조회한 항목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PDF 파일) 후 제출

★ 비밀번호 설정 안함. 파일명 임의 변경 안됨, PDF로 출력 후 스캔해서 보내지 마세요!! 변환불가 ★
비번 및 파일명 변경 시 연말정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간편안내 >

가. 기본준비서류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자료 (PDF파일)
2. 주민등록표 등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확인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 복지카드 (본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5. 소득공제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

<인적공제대상, 중소기업취업특별세액 감면대상 등 공제사항 체크필수>

6. 주택관련 공제 신청 시 공제요건확인서 필수 제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나. 특별공제, 기타공제 준비서류

발급장소

1. 보험료 납입증명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보험회사)
2. 의료비 지급명세서 (모든 의료비 영수증)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안경, 보청기 등은 구입처)
3. 교육비 납입영수증 (취학전아동 학원포함)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국외교육은 해당학교)
4. 기부금 납입증명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종교단체 등은 해당기관)
5. 연금납입확인서 (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해당은행/보험회사)
6.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해당은행/보험회사)
7. 신용카드등 소득금액 확인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신용카드회사)
8.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해당금융권)
9.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해당금융권)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무주택자/1주택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해당금융권)
11.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자/1주택자)	지방자치단체
12.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 (무주택자)	본인보관분
13.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근무지 회사에서 발급

*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5월 개인적으로 합산신고 필요

* 상기 이외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www.nts.go.kr) 참조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출력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PDF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5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등 관련 납입증명 등

－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관련증명 등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사용해야 함

2)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5번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1.15 오픈예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자료는 직원분들이 **PDF 파일**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 저장시 이름을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림1)
2. 홈택스 첫 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그림1)
3.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 클릭 (그림2)
4. 1월~12월 각 항목 불러오기 (그림3)
5. 오른쪽 상단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그림4)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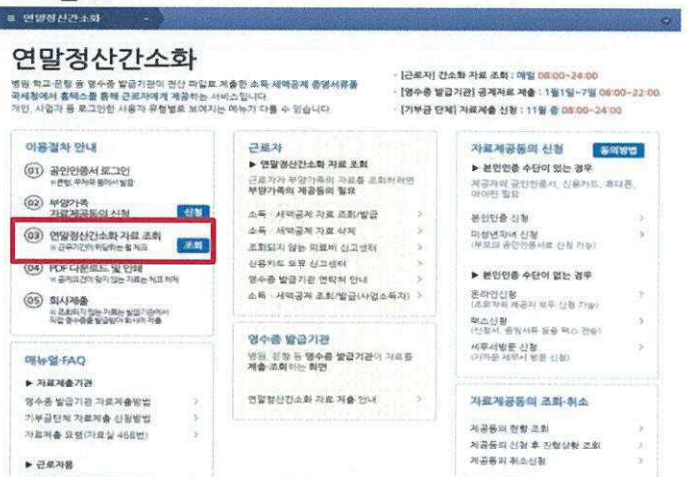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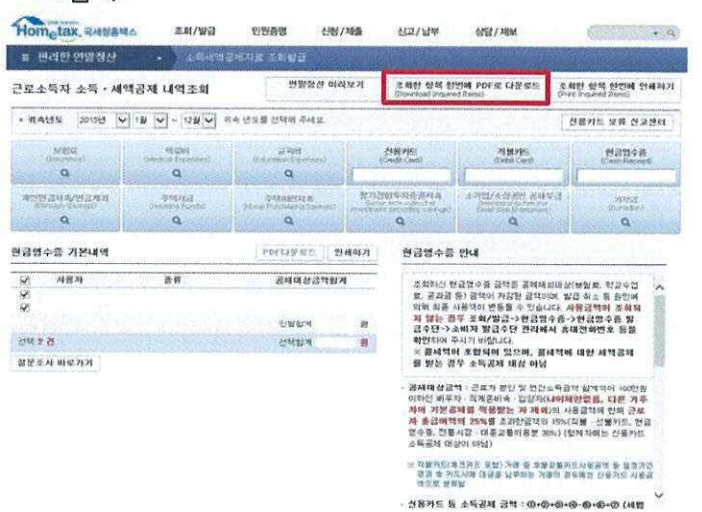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4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구 분	대 상	일 정	주 요 내 용
연말정산 안내	회사->근로자	~20.1월초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공제증명서류 수집	근로자	1.15~31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1.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수집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등)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자->회사	1.15~1.31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서류를 제출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추가작성 제출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회사->근로자	2.1~2월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 - 근로자가 누락한 증명서류등 발견시 추가제출안내
연말정산 세액계산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근로자	2.15~2월말	- 회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 확인하여 오류발견시 회사에 수정요청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회사->세무서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10.까 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세목별정보>연말정산
(개정세법, 교육동영상, 소득,세액공제요건 체크리스트등 종합정보제공)
- 연말정산 관련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상담제보→인터넷상담
 - 콜센터 ☎(국번없이) 126, 내선5번→1번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콜센터 ☎(국번없이) 126, 내선5번→2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홈택스(http://www.hometax.go.kr)→편리한 연말정산→예상세액계산하기
- 연금보험료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발행 : 회계법인 새시대 제1사업본부 2팀 회계사 김영우 TEL: 2637-0346/FAX: 2637-3358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해도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정부24 (www.gov.kr)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표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가 되도록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 군.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면. 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군. 구청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 면. 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투자조합 출자금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 병원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검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국세청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거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갈 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 거 요 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배 우 자	×	○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1959.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임양자	만 20세 이하	○	×		1999.01.0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 (사유:취학/질병/근무/사업상형편)	1999.01.01. 이후 1959.12.31.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사유:취학/질병/근무/사업상형편)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		2001.01.02. 이후
추 가 공 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9. 12. 31. 이전
	부 녀 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임양자(20세 이하)가 있는자				부녀자공제와 중복불가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소득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적용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x	x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x	기본공제 대상자녀 (임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나이제한 없음
	의료비	x	x	○	
	교육비	x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	x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연13만원) 적용			